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간호사) 채용시험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간호사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3년 3월 9일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 위원장

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분야	임용등급	채용인원	근무기간	담당직무 내용	근무예정부서
1차진료실 (간호사)	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(주35시간)	1명	임용일부터 1년	○ 1차진료실 운영을 위한 업무 - 1차 진료실 운영 - 민원접수 및 상담 - 1차 진료를 위한 간호업무 및 보건의료행정 업무 등	의약과 (1차진료실)

※ 근무성적 등에 따라 5년 범위내 연장 가능

2. 법령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, 제17조, 제21조의 3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

3. 응시자격 요건

-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.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(이하 “비위면직자 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호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.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.)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- 지역·연령·성별 : 만18세이상인 자로서 지역, 성별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○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

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“마급” 응시자격요건

(자격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※ 관련분야 경력 인정 범위 : 간호업무경력

- ◆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: 의료기관,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관련분야 간호업무 경력
- ◆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)

4. 근무조건 및 보수

- 보수(연봉)액 : 20,450천원(2023년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하한액 기준
 -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근무조건
 - 근무시간 : 주 35시간 (1일 7시간)
 - 복무기준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준용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3. 3. 16.(목) ~ 3. 20.(월) <3일간 09:00~18:00>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(대리접수가능), 팩스 및 인터넷접수 불가
 - ※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
- 접 수 처 : 서대문구보건소 의약과(보건소 7층)
 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 - ※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 - ※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시험일정

내 용	일 정	비 고
1차 서류전형	2023. 3. 21.(화)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3. 3. 22.(수)	개별통보 및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고
2차 면접시험	2023. 3. 23.(목)	서대문구보건소(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)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23. 3. 24.(금)	개별통보 및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고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○ 1차 시험(서류전형) : 개별 통보 및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○ 2차시험(면접시험) :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 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
(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)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(별지1호) 1부
 - 응시수수료 : 5,000원 (서대문구청 1청 민원여권과)
- 이력서(별지 2호) 1부
 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
 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등)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
- 자기소개서(별지 3호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4호) 1부
-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(별지 5호)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6호) 1부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별지 7호) 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학위증명서) 1부
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 - 사본 제출가능 ※ 단, 최종합격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

-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(별지 8호)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 또는 사본)
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 - 비상근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
 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 내용이 기재가 안 될 경우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' 추가 제출
-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통(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)
 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 -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
 - ※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(단, 원본 제출서류의 경우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)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(www.sdm.go.kr)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보건소 의약과(☎ 02-330-184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